

교원 연구년제 운영지침

제정 2004. 1. 1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본 대학 교원의 연구년제 운영세칙 제4조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내 연구년) 교내에서의 연구년은 새로운 연구분야의 개척, 저술, 교재개발 등 연구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가하기로 한다. 단, 본교 부임 후 15년 이상인 교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제3조(배정시기) 학과별 연구년 인원배정시기는 최초 2004년 4월 1일부 재직인원 기준으로 하며, 매 3년마다 학과별로 연구년 인원을 배정한다.

제4조(배정인원) ① 학과별 연구년 배정인원은 3년치를 합산하여 배정하며, 소수점 이하 인원에 대해서는 3년치를 합산하여 반올림하도록 한다.

② 전임교원 수가 7명 미만인 학과의 연구년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며, 배정인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.

제5조(실시인원) 학과별로 배정된 인원에 대하여는 학과의 교육·연구 등 학과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인원을 정하여 연구년을 수행하도록 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